

# 서울특별시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진철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63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16일

발 의 자 : 정진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상훈, 김정태, 김제리,  
김수규, 김달호, 송재혁,  
이호대, 채인목, 김 경  
의원(9명)

## 1. 제안 이유

-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신부를 배려하고 임신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-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 까지 확대되지 못하여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, 임신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증표인 「임산부 자동차 표지」를 양도·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사용을 막고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임신부 자동차 표지를 양도·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(안 제5조제2항)

## 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, 「주차장법」,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하고,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·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 (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 (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·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